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 제 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조항 신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20.6.9.))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과 가입기간을 정함.

(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1) 가입대상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

2) 가입기간 : 착공(착수)일부터 완공(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설공사, 시설관리의 경우 완공(완료)일 까지)

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산업의 계약금액”

으로 정함(안 제20조의2 제2항 신설)

다. 소방사업자는 해당 소방산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안 제20조의2 제3항 신설)

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안
제20조의2 제4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대상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
2. 가입기간 : 착공(착수)일부터 완공(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설공사, 시설관리의 경우 완공(완료)일 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산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소방사업자는 해당 소방산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설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①</u> <u>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u> <u>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u> <u>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가입대상 : 소방시설공사, 소</u> <u>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u> <u>소방시설관리</u> 2. <u>가입기간 : 착공(착수)일부터 완</u> <u>공(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u> <u>지(시공, 관리의 경우 완공(완</u> <u>료)일 까지)</u> <u>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u> <u>입금액은 소방산업의 계약금액으로</u> <u>한다.</u> <u>③ 소방사업자는 해당 소방산업의 계</u> <u>약을 체결하는 날(설계의 경우에는</u> <u>해당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u> <u>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u> <u>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u> <u>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u> <u>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u> <u>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소방산업과	
연 락 처	(044) 205 - 7502